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·천하람의원·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11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김용태·천하람 · 민병덕

이수진 · 김남근 · 장철민

이해민 · 김현정 · 강선우

김영호 · 정진욱 · 오세희

권향엽 • 윤건영 • 허성무

박해철 • 박희승 • 강준혁

전용기 · 김민전 · 김영배

박상혁・조 국・김종민

진선미 • 김용민 • 우원식

의원(2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,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112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"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"를 "대한민국순 직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	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		
면) ① (생 략)	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	2		
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			
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			
다.			
1. 대상 단체	1		
가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	기 <b>.</b>		
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			
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			
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			
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	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		
<u>인회</u> , 광복회, 4·19민주혁	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		
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	인회		
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			
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			
한민국무공수훈자회			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